

2018년 4월부터 개호보험이 개정되었습니다



# ♦개호보험의 구조

개호보험제도는 40세 이상의 분들이 피보험자가 되어 개호보험료를 납부하고, 개호나 지원이 필요해졌을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로 돕는 제도입니다. 거주하시는 시구정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40세 이상 누구나 (피보험자)

- ●개호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을 합니다.
-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이용자 부담을 지불합니다.

#### 65세 이상인 분 (제1호 피보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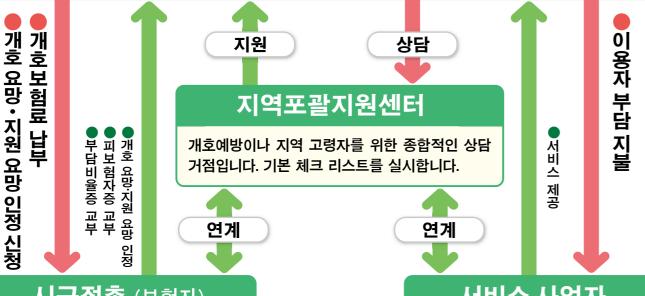
개호나 지원이 필요해졌을 때, 시구정촌의 인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나 부상이 원인이 되어 개호나 지원이 필요해졌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인 분 중 교통사고 등 제3자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개호보험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구정촌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합의 전에 시구정촌의 담당 창구로 연락해 주십시오.

#### 40~64세인 분 (제2호 피보험자)

특정 질병\*으로 개호나 지원이 필요해졌을 때, 시구정촌의 인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나 전도 등이 원인인 경우, 개호보험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특정 질병:노화와 관련 있는 질병.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16가지의 질병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암**(의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함)
-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후종인대 골화증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다계통 위축증 ●초로기 치매
- 척수 소뇌 변성증 척추관 협착증 조로증 당뇨병성 신경장애, 당뇨병성 신장질환 및 당뇨병성 망막증
- ●뇌혈관 질환 ●진행성 핵상 마비, 대뇌피질기저 핵변성증 및 파킨슨병 ●폐쇄성 동맥경화증
- ●관절 류마티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양쪽 무릎 관절 또는 고관절에 현저한 변형을 동반하는 변형성 관절증



●개호보수 지불

●개호보수 청구

### 시구정촌 (보험자)

- 개호보험제도를 운영합니다.
- 개호 요망·지원 요망 인정을 실시합니다.
- 기본 체크 리스트 해당자의 신고를 받습니다.
- 피보험자증을 교부합니다.
- ●부담비율증을 교부합니다.
- ●서비스를 확보하고 정비합니다.

### 서비스 사업자

도도부현 등의 지정을 받은 민간기업, NPO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6**개호보험료

개호보험료는 개호보험제도를 건전하게 운영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잊지 말고 보험료를 납부합시다.



### 65세 이상인 분 (제1호 피보험자)

65세 이상인 분의 보험료는 소득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결정됩니다. 65세가 된 달(65세 생일의 전날이 속한 달)부터 원칙상 연금에서 납부됩니다. 납부 방법은 여러분이 수급하고 계신 연금액에 따라 2종류로 분류됩니다.



#### 노령(퇴직)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이

#### 18만 엔 **이상**(연간)인 분

연금의 정기 지불(연 6회) 시, 연금에서 보험료가 미리 공제됩니다(특별 징수).

※연금이 연간 18만 엔 이상이라도 연도 도중에 65세가 됐을 때나 다른 시구정촌에서 전입했을 때 등에는 일시적으로 납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노령(퇴직)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이 |18만 엔 **미만**(연간)인 분

시구정촌에서 송부받은 납부서나 계좌이체로 기일까지 금융기관 등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보통 징수).

#### 보험료를 체납하면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의 이용자 부담은 통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의 10%, 20% 또는 30%이지만,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 1년 이상 체납하면

#### 1년 6개월 이상 체납하면

#### 2년 이상 체납하면

비용 전액을 일단 이용자가 부담하고, 신청에 따라 추후 보험 급부분이 지급됩니다.

비용 전액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신청 후에도 보험 급부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체납한 보험료로 충당되기도 합니다.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 부담이 30% 또는 40%가 되거나, 고액 개호 서비스비 등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는…

재해나 실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는, 감면이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속히 시구정촌의 담당 창구와 상담해 주십시오.

#### 40~64세의 의료보험에 가입해 계신 분 (제2호 피보험자)

40~64세의 보험료는 가입 중인 의료보험의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의료보험료와 일괄 납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
산정 방법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세(료)의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세대별로 산정됩니다.	의료보험별로 설정된 개호보험요율과 급여 (표준보수 월액) 및 상여(표준상여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납부 방법	의료보험분, 후기고령자지원금분, 개호보험분을 합 쳐 국 민 건 강 보 험 세 (료)로 세 대 주 가 납부합니다.	의료보험료와 개호보험료를 합쳐 급여 및 상여에서 징수됩니다. ※40~64세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개별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서비스 이용의 흐름

개호나 지원이 필요해졌을 때, 지역포괄지원센터나 시구정촌의 창구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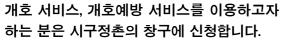
# 상담합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나 시구정촌의 창구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상담합니다.

개호 서비스, 개호예방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

스이타 시 고령자 안심ㆍ자신 서포트 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

# 신청합니디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외에, 지역포괄지원센터나 거택개호지원 사업자, 개호보험시설 등이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개호 요망·지원 요망 인정 신청서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 의료보험 피보험자증(40~64세에 한함)
- ●주치의 의견서

※이 외에 원칙상 본인이나 대리인의 신원 확인 서류 및 마이넘버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나 시구정촌의 창구에서 심신이나 일상생활 상태 등 (생활 기능)을 알아보는 기본 체크 리스트로 생활 기능을 확인합니다.

생활 기능의 저하가 보이는 경우에는 스이타 시 고령자 안심 • 자신 서포트 사업 해당자(이하, 기본 체크 리스트 해당자)로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13, 14

# 인정 조사를 받습니다

시구정촌의 직원 등이 자택을 방문해 심신 상태에 대해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컴퓨터로 판정(1차 판정)하며, 추가로 주치의 의견서와 함께 개호인정심사회에서 심사·판정(2차 판정)합니다.



#### 주치의 의견서

생활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치료 내용, 심신 상태 등에 대해 주치의가 기재한 서류입니다.

#### 개호인정심사회

시구정촌이 임명하는 보건, 의료, 복지 분야의 학식 경험자 4인으로 구성되며, 개호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인정 결과가 송부됩니다

인정 결과는 원칙상 신청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구정촌으로부터 송부됩니다.

#### 비해당

개호 요망이나 지원 요망이 인정되지 않은 분

기본 체크 리스트에서 생활 기능 저하가 보이는 경우에는 '기본 체크 리스트 해당자'로 스이타 시 고령자 안심·자신 서포트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13, 14

#### 지원 요망1·2

개호예방 서비스 등을 이용함으로써 생활 기능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 【 개호 요망1∼5

개호 서비스를 이용함 으로써 생활 기능의 유지나 개선을 꾀하는 것이 적절한 사람

# 플랜을 작성합니디

#### 기본 체크 리스트 해당자

## 지원 요망1·2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 포괄지원센터에 개호예방 케 어 매 니 지 먼 트 를 의뢰하고, 시구정촌에 '거택 (개호예방) 서비스 계획 작성·예방 케어 매니지먼트 의뢰(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지역포괄지원센터

담당 직원이 이용자나 가족과 대화를 통해 과제를 분석합니다. 서비스 담당자 회의 등을 거쳐 스이타 시 고령자 안심·자신 서포트 사업 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mark>● 스이타 시</mark> 고령자 안심·자신 서포트 사업

<mark>을 이용합니다</mark>

P14

#### 지원 요망1.2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포 괄지원센터에 개호예방 케어 플랜 작성을 의뢰하고, 시구정촌에 '거택(개호예방) 서비스 계획 작성·예방 케어 매니지먼트 의뢰(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지역포괔지원센터

담당 직원이 이용자나 가족과 대화를 통해 과제를 분석합니다. 서비스 담당자 회의 등을 거쳐 개호예방 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개호예방 서비스와 스이타 시 고령자 안심·자신 서포트 사업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호예방 서비스

● 스이타 시 고령자 <mark>안심·자신</mark> 서포트 사업

을 이용합니다

P7~10. P12, 14

#### 개호 요망1~5

#### ●재택 생활을 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케어 플랜 작성을 의뢰할 거택개호지원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구정촌에 '거택 (개호예방) 서비스 계획 작성· 예방 케어 매니지먼트 의뢰 (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거택개호지원 사업자

거택개호지원 사업자의 케어 매니저가 이용자나 가족과 대화를 통해 과제를 분석합니다. 서비스 담당자 회의 등을 거쳐 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개호서비스

를 이용합니다

P7~12

#### ●시설에 입소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 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해 계약합니다.



#### 시설 서비스 사업자

시설의 케어 매니저가 이용자나 가족과 대화를 통해 과제를 분석합니다. 서비스 담당자 회의 등을 거쳐 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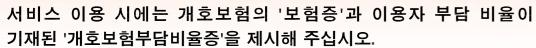
●시설 서비스

를 이용합니다

P11

# ◆이용자의 부담

케어 플랜에 의거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실제로 발생하는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불합니다.





#### 이용자 부담 비율에 대해서

개호보험 서비스는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이용자 부담 비율)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된 재택 서비스 등에는 상한액(지급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초과한 만큼의 금액 전액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이용자 부담 비율 [개정 포인트 /

<b>30%</b> 2018년 8월부터	①2양쪽에 해당하는 경우 ①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220만 엔 이상 ②동일 세대에 있는 65세 이상인 분의 '연금 수입+그 밖의 합계 소득 금액'이 [•독신 세대=340만 엔 이상 • 2인 이상 세대=463만 엔 이상		
20%	30% 이외의 분 중 ① 2 양쪽에 해당하는 경우 ①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160만 엔 이상 ②동일 세대에 있는 65세 이상인 분의 '연금 수입+그 밖의 합계 소득 금액'이 [• 독신 세대=280만 엔 이상 • 2인 이상 세대=346만 엔 이상		
10%	상기 이외의 분		

- ●표 안의 합계 소득 금액에 대해서 <mark>개정 포인트</mark>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양 공제나 의료비 공제 등의 소득 공제를 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2018년 8월부터는 합계 소득 금액에서 '장기 양도 소득 및
- 단기 양도 소득에 관한 특별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표 안의 그 밖의 합계 소득 금액에 대해서 합계 소득 금액에서 연금의 잡소득을 제외한 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 ■지급 한도액(1개월)

개호 요망 상태 구분	지급 한도액
지원 요망1	50,030엔
지원 요망2	104,730엔
개호 요망1	166,920엔
개호 요망2	196,160엔
개호 요망3	269,310엔
개호 요망4	308,060엔
개호 요망5	360,650엔

- ●표준 지역의 금액입니다 (개호보험이 부담하는 분도 포함합니다).
- ●기본 체크 리스트 해당자는 원칙상 지원 요망1의 지급 한도액이 설정됩니다.

### 부담이 고액이 되었을 때

#### ○이용자 부담이 고액이 되었을 때 (고액 개호 등 서비스비의 지급)

같은 달에 이용한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 합계액(동일 세대 내에 복수의 이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 합계액)이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했을 때는, 신청을 통해 초과한 만큼의 금액이 '고액 개호 등 서비스비'로 지급됩니다. 지급 한도액을 초과한 자기 부담분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자 부담 단계 구분	상한액(월간)
●현역과 동등한 소득자 <sup>※1</sup>	세대 44,400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민세 과세 (현역과 동등한 소득자 이외)	세대 44,400엔※2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민세 비과세	세대 24,600엔
• 노령복지연금 수급자 • 합계 소득 금액 및 과세 연금 수입액의 합계가 80만 엔 이하인 분	개인 15,000엔
●생활보호 수급자	개인 15,000엔
●이용자 부담을 15,000엔으로 감액하여, 생활보호 수급자가 되지 않는 경우	세대 15,000엔

- ※1 동일 세대에 과세 소득 145만 엔 이상인 65세 이상인 분이 있고, 65세 이상인 분의 수입이 독신의 경우에는 383만 엔 이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520만 엔 이상인 세대의 분
- ※2 동일 세대의 모든 65세 이상인 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의 이용자 부담 비율이 10%인 세대에는, 2017년 8월부터 3년 동안에 한해 연간 상한을 446,400엔(37,200엔×12개월)으로 하는 완화 조치가 있습니다.

#### ○개호와 의료 양쪽의 자기 부담이 고액이 되었을 때(고액의료·고액개호합산제도)

개호보험과 의료보험 양쪽의 이용자 부담이 고액이 된 경우, 개호보험과 의료보험 각각의 한도액 (개호보험은 고액 개호 등 서비스비, 의료보험은 고액 요양비)을 적용한 후, 추가로 연간(8월~다음 해 7월) 이용자 부담액을 합산하여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했을 때는 신청을 통해 초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시설을 이용한 서비스의 경우

시설을 이용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비용의 10%, 20% 또는 30%, 일상생활비, 거주비 등·식비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이용자 부담분(10%, 20% 또는 30%)



#### 일상생활비



#### 거주비 등 • 식비

기준 비용액 거주비 등·식비의 이용자 부담은 시설과 이용자 사이에서 계약에 의해 결정되지만, 기준이 되는 금액(기준 비용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거주비 등・식비의 기준 비용액<1일당>

	식비			
유닛형 개인실	유닛형 개인실 타입의 다인실	기존형 개인실	다인실	딱미
1,970엔	1,640엔	1,640엔 (1,150엔)	370엔 (840엔)	1,380엔

●개호 노인 복지 시설과 단기 입소 생활 개호의 경우에는 ( ) 안의 금액입니다.

#### 단 저소득자는 거주비 등 • 식비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개호 보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을 해 인정받은 경우에는 **거주비 등 • 식비는 부담 한도액까지만 부담**합니다. 초과한 금액은 개호보험의 '특정 입소자 개호 서비스비'로 충당됩니다.

#### ■부담 한도액<1일당>

이용자 부담 단계 구분		거주비등				
		유닛형 개인실	유닛형 개인실 타입의 다인실	기존형 개인실	다인실	식비
제1단계	본인 및 세대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 대상이며, 노령 복지 연금 수급자, 생활 보호 수급자	820엔	490엔	490엔 (320엔)	0엔	300엔
제2단계	본인 및 세대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 대상이며, 합계 소득 금액+과세 연금 수입액+비과세 연금(유족 연금·장애 연금) 수입액이 80만 엔 이하인 사람	820엔	490엔	490엔 (420엔)	370엔	390엔
제3단계	본인 및 세대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 대상이며, 이용자 부담 단계 제2 단계 이외인 사람	1,310엔	1,310엔	1,310엔 (820엔)	370엔	650엔

- ●개호 노인 복지 시설과 단기 입소 생활 개호를 이용한 경우, 기존형 개인실의 부담 상한액은 ( ) 안의 금액입니다.
- ●제1~3단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도 특례로 제3단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구정촌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표 안의 합계 소득 금액은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부양 공제나 의료비 공제 등의소득 공제를 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2018년 8월부터는 함계 소득 금액에서 '장기 양도 소득 및 단기 양도 소득에 관한 특별 공제액을 공제' 및 '공적 연금 등에 관한 잡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개정 포인트 ✔

위의 표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정 입소자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①주민세 비과세 세대라도 다른 세대인 배우자가 주민세 과세 대상인 경우
- ②주민세 비과세 세대(다른 세대인 배우자도 비과세)라도 저축금 등이 독신 1,000만 엔, 부부 2,0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 **아서비스의 종류**

이용자 부담의 기준은 서비스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의 10%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2018년 4월부터 서비스 비용이 변경되었습니다. <mark>개정 포인트 /</mark>
- ★게재된 금액 외에, 서비스 내용이나 지역에 따라 가산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에 따라서는 별도로 회비, 거주비, 일상생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서비스에 따라서는 공생형 서비스 사업소의 지정을 받은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에서도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구정촌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개정 포인트

# 재택 서비스

재택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을 받아 이용하는 서비스

#### 개호 요망1~5 해당자

#### 방문개호(홈헬프)

홈 헬퍼 등이 자택을 방문해 식사·입욕·배설 등의 신체 개호나 조리·세탁 등의 생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통원 등을 목적으로 한 승강 보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회당 이용자 부담 기준(10% 부담인 경우)

신체 개호 중심(20분 이상 30분 미만인 경우) ▶ 269엔 생활 지원 중심(20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 197엔

※조조, 야간, 심야 등에는 가산됩니다.

### 방문형 서비스

개호예방 방문 개호는 '방문형 서포트 서비스'로 스이타 시 고령자 안심·자신 서포트 사업을 통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14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원 요망1·2 해당자

#### 방문 입욕 개호

이동입욕차로 방문한 개호 직원과 간호 직원이 제공하는

욕조를 이용해 입욕 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회당 이용자 부담 기준(10% 부담인 경우) 3인 체제로 실시하는 경우

개호 요망1~5 ▶ 1,355엔

#### 개호예방 방문 입욕 개호

질병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동입욕차로 방문한 개호 직원과 간호 직원이 제공하는 욕조를 이용해 입욕 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회당 이용자 부담 기준(10% 부담인 경우) 2인 체제로 실시하는 경우

지원 요망1·2 > 916엔

#### 방문 리허빌리테이션

사업자 의사의 지시에 따라 물리치료사나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가 방문하여, 자택에서의 생활 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리허빌리테이션을 제공합니다.

○ 이용자 부담 기준(10% 부담인 경우)

개호 요망1~5 ▶ 1회(20분 이상)당 310엔

#### 개호예방 방문 리허빌리테이션

사업자 의사의 지시에 따라 물리치료사나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가 방문하여, 자택에서의 생활 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리허빌리테이션을 제공합니다.

◇ 이용자 부담 기준(10% 부담인 경우)

지원 요망1·2 ▶ 1회(20분 이상)당 310엔

#### 개호 요망1~5 해당자

#### 방문 간호

질환 등을 안고 있는 사람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자택을 방문한 간호사 등으로부터 요양상 필요한 도움이나 진료 보조를 받습니다.



○1회당 이용자 부담 기준(10% 부담인 경우) 30분 미만인 경우

방문 간호 스테이션에서 방문한 경우 ▶ 507엔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방문한 경우 ▶ 430엔

#### 지원 요망1·2 해당자

#### 개호예방 방문 간호

질환 등을 안고 있는 사람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자택을 방문한 간호사 등으로부터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한 요양상 필요한 도움이나 진료 보조를 받습니다.

30분 미만인 경우

방문 간호 스테이션에서 방문한 경우 ▶ 486엔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방문한 경우 > 411엔

#### 거택 요양 관리 지도

통원이 곤란한 사람이 자택을 방문한 의사, 치과의사, 약사, 관리영양사 등으로부터 요양상 필요한 관리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회당 이용자 부담 기준(10% 부담인 경우)

#### 개호예방 거택 요양 관리 지도

통원이 곤란한 사람이 자택을 방문한 의사, 치과의사, 약사, 관리영양사 등으로부터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한 요양상 필요한 관리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회당 이용자 부담 기준(10% 부담인 경우)

관리나 지도 등을 행하는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 260엔~558엔

#### ●시설을 다니며 이용하는 서비스

#### 개호 요망1~5 해당자

#### 통원 개호(데이서비스)

통원 개호 시설에서 식사, 입욕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이나 기능 훈련 등의 지원을 하룻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1회당 이용자 부담 기준(10% 부담인 경우) 통상 규모의 사업소·7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마중 배웅 포함

개호 요망1~5 ▶ 680엔~1,185엔

#### 지원 요망1·2 해당자

#### 통원형 서비스

개호예방 통원 개호는 '통원형 서포트 서비스'로 스이타 시 고령자 안심·자신 서포트 사업을 통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14를 참조해 주십시오.

#### 통원 리허빌리테이션(데이케어)

개호 노인 보건 시설이나 의료 시설 등에서 식사입욕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이나 리허빌리테이션을 하룻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1회당 이용자 부담 기준(10% 부담인 경우) 통상 규모의 사업소·6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인 경우 ※마중 배웅 포함.

개호 요망1~5 ▶ 711엔~1.306엔

#### 개호예방 통원 리허빌리테이션(데이 케어)

개호 노인 보건 시설이나 의료 시설 등에서 식사입욕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이나 리허빌리테이션 목표에 맞춘 선택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 부담 기준(월 단위 정액) (10% 부담인 경우) 공통 서비스(1개월당) ※마중 배웅 포함.

지원 요망1·2 > 1.825엔·3.854엔

#### ●단기간 입소해 이용하는 서비스(쇼트 스테이)

#### 개호 요망1~5 해당자

#### 지원 요망1·2 해당자

#### 단기 입소 생활 개호

개호 노인 복지 시설 등에 단기간 입소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이나 기능 훈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 부담 기준 [1일] (10% 부담인 경우) 다인실의 경우

개호 요망1~5 ▶ 623엔~913엔

#### 단기 입소 요양 개호

개호 노인 보건 시설이나 의료 시설 등에 단기간 입소해 간호나 의학적 관리하에서의 개호,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이나 기능 훈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 부담 기준 [1일] (10% 부담인 경우) 다인실의 경우

개호 요망1~5 ▶ 871엔~1.096엔

#### 개호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개호 노인 복지 시설 등에 단기간 입소해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이나 기능 훈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 부담 기준 [1일] (10% 부담인 경우) 다인실의 경우

지원 요망1·2 > 466엔·579엔

#### 개호예방 단기 입소 요양 개호

개호 노인 보건 시설이나 의료 시설 등에 단기간 입소해 간호나 의학적 관리하에서의 지원,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이나 기능 훈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 부담 기준 [1일] (10% 부담인 경우) 다인실의 경우

지원 요망1·2 > 644엔·807엔

#### ●유료 노인 홈 등에서 개호나 지원을 받는 서비스

#### 개호 요망1 ~ 5 해당자

#### 지원 요망1·2 해당자

#### 특정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특정 시설(지정을 받은 유료 노인 홈 등)에 입소한 사람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이나 개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 부담 기준 [1개월(31일 계산)] (10% 부담인 경우)

개호 요망1~5 ▶ 17,448엔~26,140엔

# 개호예방 특정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특정 시설(지정을 받은 유료 노인 홈 등)에 입소한 사람이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이나 개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 부담 기준 [1개월(31일 계산)] (10% 부담인 경우)

지원 요망1·2 > 5,882엔·10,097엔



#### ●재택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 개호 요망1 ~ 5 해당자

#### 지원 요망1·2 해당자

#### 복지 용구 대여

일상생활의 자립을 돕기 위한 복지 용구를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개호예방 복지 용구 대여

개호예방에 도움이 되는 복지 용구를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복지 용구의 종류나 사업자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 요망1·2 개호 요망1	개호 요망2·3	개호 요망4·5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난간(공사가 필요 없는 것)				<b>A</b>
슬로프(공사가 필요 없는 것)				일부
보행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행 보조 지팡이				×
휠체어(휠체어 부속품 포함)	×			원칙상
특수 침대(특수 침대 부속품 포함)	×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바닥 미끄러짐 방지 용구	×			필요하신 분은 지역포괄
체위변환기	×			지원센터나 고령복지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치매 노인 배회 감지 기기	×			
이동용 리프트(슬링 부분 제외)	×			
자동 배설 처리 장치	<b>^</b> *	<b>*</b>		※소변만 흡입하는 장치는   이용 가능합니다.

- ●기능이나 가격대가 다른 몇 가지 상품을 사업자가 제시합니다. <mark>개정 포인트 .</mark>
- ●2018년 10월부터 상품별로 전국 평균 대여 가격이 공표되며, 상한액이 설정됩니다. 개정 포인트

#### 특정 복지 용구 판매

입욕이나 배설 등에 사용하는 복지 욕구를 구입했을 때, 구입비가 지급됩니다. 신청이 필요합니다.

#### 특정 개호예방 복지 용구 판매 신청

입욕이나 배설 등에 사용하는 복지 용구 중 개호예방에 도움이 되는 용구를 구입했을 때, 구입비가 지급됩니다. 신청이 필요합니다.

●좌변기 ●입욕 보조 용구 ●자동 배설 처리 장치의 교환 가능 부품 ●간이 욕조 ●이동용 리프트의 슬링 부분

✔ 서비스 비용 기준

✔ 서비스 비용 기준

동일 연도 내 10만 엔을 상한으로 비용의 90%나 80% 또는 70%가 지급되며, 이용자는 10%, 20% 또는 30%를 부담합니다. ★도도부현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사업자에게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복지 용구 구입비가 지급됩니다.

#### 주택 개수비 지급

난간 설치나 단차 제거 등의 주택 개수를 했을 때 주택 개수비가 지급됩니다. 개수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개호예방 주택 개수비 지급

개호예방에 도움이 되는 난간 설치나 단차 제거 등의 주택 개수를 했을 때 주택 개수비가 지급됩니다. 개수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미끄럼 방지·원활한 이동을 위한 바닥 또는 통로면 재료의 변경 ●난간 설치
- ●단차 제거 ●미닫이문 등으로 문 교체 ●양변기 등으로 변기 교체
- ※상기 개수에 따라 필요한 개수도 대상이 됩니다.
- ☑ 서비스 비용 기준

✔ 서비스 비용 기준

20만 엔을 상한으로 비용의 90%, 80% 또는 70%가 지급되며, 이용자는 10%, 20% 또는 30%를 부담합니다. ★사전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주택 개수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설 서비소 \*\*개호 요망1∼5 해당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입소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요망1·2 해당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 서비스에는 별도로 주거비・식비・일상생활비가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P6 참조

#### ●상시 개호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개호 요망1 ∼ 5 해당자 (신규 입소는 원칙상 개호 요망3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개호 노인 복지 시설(특별 양호노인 홈)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시 개호가 필요하며, 자택에서는 개호나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입소하는 시설입니다. 식사·입욕·배설 등의 개호나 기능 훈련, 요양에 필요한 도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 부담 기준[1개월(31일 계산)] (10% 부담인 경우) 다인실의 경우

개호 요망1~5 ▶ 18,200엔~27,087엔

#### ●재택 복귀를 목표로 하는 시설

#### 개호 요망1~5 해당자

#### 개호 노인 보건 시설(노인보건시설)

의료 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재택 복귀를 목표로 하는 시설입니다. 상태가 안정된 사람이 의사에 의한 의학적 관리하에서, 의료상의 케어나 리허빌리테이션, 식사, 입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 부담 기준[1개월(31일 계산)] (10% 부담인 경우) 다인실(재택강화형)의 경우

개호 요망1~5 ▶ 26,728엔~34,798엔

####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 개호 요망1~5 해당자

####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요양병상등)

의료 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의학적 관리하에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시설입니다. 의료·간호· 개호·리허빌리테이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1일 현재, 스이타 시내에서 이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소는 없습니다.

#### ●장기 요양과 개호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개호 요망1 ~ 5 해당자

#### 개호 의료원 2018년 4월 창설

개정 포인트

일상적인 의학적 관리와 간호, 터미널 케어 등의 의료 기능과 생활 시설을 겸비한 시설입니다. 의료, 간호, 개호, 리허빌리테이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1일 현재, 스이타 시내에서 이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소는 없습니다.

## 지역 밀착형 서비스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원칙상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구정촌에 따라 시행되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개호 요망1~5 해당자

지원 요망1·2 해당자

#### 치매 대응형 통원 개호

개호예방 치매 대응형 통원 개호

치매 환자가 식사나 입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이나 기능 훈련, 전문적인 케어 등의 서비스를 하룻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밀착형 통원 개호

소규모(정원 18명 이하) 통원 개호 시설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이나 기능 훈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망1·2 해당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개호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통원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방문이나 숙박 서비스를 조합한 다기능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와 방문 간호를 조합함으로써 개호나 간호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망1·2 해당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개호예방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치매 환자가 공동 생활을 하는 주거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이나 기능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망1 해당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소규모(정원 29명 이하) 개호 노인 복지 시설에 입소한 사람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이나 기능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망1·2 해당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규 입소는 원칙상 개호 요망3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순회나 통보 시스템에 의한 야간 전용 방문 개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망1·2 해당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정기 순회 • 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주간·야간 동안 정기적인 순회와 수시 통보를 통해 개호나 간호, 긴급 시 대응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망1·2 해당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소규모(정원 29명 이하) 개호 전용형 특정 시설(지정을 받은 유료 노인 홈 등)에 입소한 사람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이나 기능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망1·2 해당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에 따라서는 별도로 회비, 거주비, 일상생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개호예방 · 일상생활 지원 종합 사업

개호예방·일상생활 지원 종합 사업은 시구정촌이 개호예방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개호예방 사업에 비해 보다 이용자의 상태나 희망에 맞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비스의 내용이나 이용자 부담은 시구정촌마다 다릅니다).

개호예방이란 '될 수 있는 한 개호가 필요하지 않도록' '만약에 개호가 필요해졌더라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자신답게 자립해 생활하기 위해서는 건강할 때부터 개호예방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65세 이상인 분

지역포괄지원센터 또는 시구정촌의 담당 창구와 상담합니다. (원칙상 이용자 본인이 창구에서 수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스이타 시민 발랄 건강 대작전만 이용하고 싶은 분

개호 서비스나 개호예방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 스이타 시 고령자 안심·자신 서포트 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 등

개호 요망 인정을 받습니다 (P3, 4 참조)

#### 기본 체크 리스트를 받습니다

※기본 체크 리스트를 받아 스이타 시 고령자 안심·자신 서포트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체크 리스트 해당자'가 된 후에도 개호 요망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호 요망1~5 해당자

#### 지원 요망1·2 해당자

개호예방

서비스

(P7~10, P12)

스이타 시 고령자

안심 • 자신

서포트 사업

스이타 시 고령자 안삼 자신 서포트 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기본 체크 리스트를 받읍시다.

비해당자

## 생활 기능 저하가 보이는 분

해당자

• 생활 기능의 저하가 보이지 않은 분

발랄 건강 대작전만 이용하고자 하는 스이타시민

개호 예방 서비스 비스

#### 개호 서비스 (P7~12)

#### · 일 상 생활 지 원

스이타시민 발랄 건강 대작전 스이타시민 발랄 건강 대작전

스이타 시민 발랄 건강 대작전

스이타 시민 발랄 건강 대작전

스이타 시 고령자

안심 • 자신

서포트 사업

스이타 시민 발랄 건강 대작전

## **゙ 개호예방・일상생활 지원 종합 사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스이타 시민 발랄 건강 대작전 (일반 개호예방 사업)

65세 이상인 모든 분

지역민들 간의 관계를 통해 자립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하고 자신답게 삶의 보람과 역할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인 분이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십시오.

● 개호예방에 관한 강좌나 강연회 개최(개호예방 보급 계발 사업) 운동기의 기능 향상, 영양 개선, 구강 기능 향상, 치매·우울증· 은둔 예방 등의 개호예방에 관한 강좌나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 모든 지역민의 개호예방을 위한 활동 지원(지역 개호예방 활동 지원 사업)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된 '소통의 장'을 만들어 계속적인 지원과 알찬 내용을 만들기 위한 개호예방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그 밖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파악해 개호예방 활동에 연결시키는 지원, 목표 달성의 검증· 평가 등의 사업도 시행합니다.

# ◆ 스이타 시 고령자 안심・자신 서포트 사업

지원 요망1·2 해당자 기본 체크 리스트 해당자

'지원 요망1·2'나 '기본 체크 리스트 해당자'로 판정된 분은, 다음의 '스이타 시 고령자 안심·자신 서포트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형 서비스

- ●방문형 서포트 서비스(기존의 방문 개호(홈 헬프)와 동등한 서비스) 홈 헬퍼가 자택을 방문해, 신체 개호나 생활 지원을 합니다.
- ●방문형 단기 집중 서포트 서비스 전문직이 방문해 생활 행위의 회복·향상에 중점을 두고 생활상의 불안·불편을 경감하기 위한 지도·지원을 합니다.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 <u>통원형</u> 서비스

●통원형 서포트 서비스(기존의 통원 개호(데이 서비스)와 동등한 서비스)
통원 개호 시설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이나 생활 행위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합니다.

13

#### ◆ 스이타 시청

고령복지실	우)564-8550 스이타 시 이즈미초 1-3-40 ☎ 06-6384-1231(대표) FAX 06-6368-7348
<b>개호보험 신청·상담</b> (확정신청·보험료)(보험급부)	저층동 1층 119번 창구 ☎ 06-6384-1343 ☎ 06-6384-1341
<b>개호 요망·지원 요망 인정</b> (방문조사)(개호인정심사회)	가설동 2층 152번 창구 ☎ 06-6384-1885 ☎ 06-6384-1345
고령자 복지에 관한 상담 (기간형 지역포괄지원센터)	저층동 1층 118번 창구 1 06-6384-1360
<b>개호보험의 계획과 사업의 추진</b> (스이타 시 건강 연령 플랜 등)	가설동 1층 151번 창구 ☎ 06-6384-1339
<b>삶의 보람 만들기·경로 사업</b> (고령 클럽 등)	가설동 1층 151번 창구 ☎ 06-6384-1336
<b>복지지도감사실</b> 개호보험 사업자 지정, 지도 감사	우) 564-0027 스이타 시 아사히마치 3-401 ☎ 06-6155-8748 FAX 06-6317-5356

발행자 스이타 시청 고령복지실 개호보험그룹

우) 564-8550 스이타 시 이즈미초 1-3-40

☎ 06-6384-1231(대표)

시 홈페이지 http://www.city.suita.osaka.jp

발행일 2018년 8월



유니버셜 디자인(UD)의 이념에 의거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디자인의 폰트를 채택했습니다.



